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획재정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고,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에 두는 정원 22명 중 14명(4급 2명, 5급 12명)은 감축하며, 8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4명, 7급 1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2년 10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고,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이 2022년 11월 1일로 폐지됨에 따라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에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한 정원(5급 2명)을 종전의 직급(8급 2명)으로 환원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6.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했던 기획재정부 정원 17명 중 2명(5급 2명)은 종전의 직급(6급 2명)으로 환원하고, 15명(5급 15명)은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3년 9월 27일까지로 변경하며, 하부조직의 일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6. 21. ~ 6.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0항에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1항제6호를 삭제한다.

3의3.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 기획·입안 및 운용

제24조제2항 중 “총괄기획과·시스템구축과 및 재정정보공개과를 두되, 각 과장”을 “재정시스템과를 두며, 재정시스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③ 재정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관련 재정분석 교육과 업무지원 체계 마련
3.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의 관리
4.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 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재정·행정·통계 관련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
5.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및 재정분석을 위한 연구개발
6.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조정

별표 1 중 총계 “1,082”를 “1,084”로 하고, 일반직 계 “1,072”를 “1,074”로

하며, 행정서기 “47”을 “49”로 한다.

별표 1의2 중 총계 “1,083”을 “1,085”로 하고, 일반직 계 “1,073”을 “1,075”로 하며, 행정사무관 “406”을 “404”로, 행정주사 “112”를 “114”로, 행정서기 “47”을 “49”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 8) 및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예산실 기후환경예산과	4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7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9) 장기전략국 기후대응전략과	5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7급 1명)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4의2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단(존속기한: 2022년 10월 31일)

총계	8
일반직 계	8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농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공업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 관	4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
는 통계주사보

1

기획재정부령 제69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기획재정부령 제82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및 기획재정부령 제86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획재정부 정원에 관한 특례)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획재정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31일까지는 별표 1의3을 적용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종전의 기획재정부령 제693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으로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직급이 환원된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을 제외한 정원 15명(행정사무관 14명,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농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공업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1명)은

2023년 9월 27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9월 28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
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행정주사 15명으로 본다.

[별표 1의3]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

(기획재정부령 제00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부칙 제2조 관련)

총계	1,083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2
별정직 계	7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2
비서(6급 상당)	2
비서(7급 상당)	1
비서(9급 상당)	1
일반직 계	1,073
고위공무원단	37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1
서기관	7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9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92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농업 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0
행정사무관	404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농업사무관 · 환경사무관 · 공업사무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 구관	77
행정주사	114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주사 · 전산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또는 사서주사	78
운전주사	1
행정주사보	24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 는 통계주사보	26
행정서기	47
행정서기 · 전산서기 또는 사서서기	15
행정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	9
운전서기보	7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7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촬영 담당)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세제실) ① ~ ⑱ (생 략)	제11조(세제실) ① ~ ⑱ (현행과 같음)
⑳ 산업관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⑳ ----- -----.
1. ~ 3의2. (생 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3의3.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u> <u>의 기획·입안 및 운용</u>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㉑ 관세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㉑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u>6. 보조금 및 상계관세제도의</u> <u>기획·입안 및 운용</u>	<u><삭 제></u>
7. ~ 14. (생 략)	7. ~ 14. (현행과 같음)
㉒ (생 략)	㉒ (현행과 같음)
제24조(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 축추진단) ① (생 략)	제24조(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 축추진단) ① (현행과 같음)
②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구축 추진단(이하 이 조에서 “추진 단”이라 한다)에 <u>총괄기획과·</u> <u>시스템구축과 및 재정정보공개</u> <u>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u> <u>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u>	② ----- ----- ----- <u>재정시스템과</u> <u>를 두며, 재정시스템과장</u> ----- ----- -----.
③ 총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③ 재정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

분장한다.

1.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관련
사용자 교육
3.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
4.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업 관련 제도개선 방안 수
립·조정
5. 그 밖에 단 내 다른 과의 주
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시스템구축과장은 다음 사항
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의 관리
2.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관련
사용자를 위한 원격 업무지원
등 관련 시스템 구축
3.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보안

을 분장한다.

1.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관련
재정분석 교육과 업무지원 체
계 마련
3.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업의 관리
4.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과 다
른 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재정·행정·통계 관련 정보
시스템 간의 연계
5.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관련 제도 개선 및 재정분석
을 위한 연구개발
6.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의·조
정

<삭 제>

<u>및 개인정보보호방안 마련</u> <u>4.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u> <u>관련 신기술 적용방안 마련</u> <u>등 시스템 기반구축에 관한</u> <u>사항</u> <u>⑤ 재정정보공개과장은 다음 사</u> <u>항을 분장한다.</u> <u>1. 공공부문 재정정보 통합 공</u> <u>개(이하 “재정정보통합공개”</u> <u>라 한다)를 위한 정책수립 및</u> <u>제도개선 검토</u> <u>2. 재정정보통합공개를 위한 홈</u> <u>페이지 구축</u> <u>3. 재정정보통합공개를 위한 차</u> <u>세대 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u> <u>기관에서 구축·운영하는 재</u> <u>정·행정·통계 관련 정보시</u> <u>스템 간의 연계 및 유관기관</u> <u>과의 협의·조정</u> <u>4. 재정정보통합공개를 위한 재</u> <u>정사업의 속성정보 관리체계</u> <u>마련</u> <u>⑥ (생략)</u> 기획재정부령 제693호 기획재정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u><삭 제></u> <u>⑥ (현행과 같음)</u> 기획재정부령 제693호 기획재정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

일부개정령 부칙	일부개정령 부칙
<u>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 한 직급의 존속기간)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행정사무관 16명, 행정사무관 · 전산사무관 · 시설사무관 · 농업 사무관 · 환경사무관 · 공업사무 관 · 사서사무관 또는 기록연구 관 1명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 표 1의2의 행정주사 17명으로 본다.</u>	<u><삭 제></u>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82</u>		<u>1,084</u>	+2	
		•	•		•		
		•	•		•		
일	반	직 계	<u>1,072</u>		<u>1,074</u>	+2	
		•	•		•		
		•	•		•		
행	정	서기	<u>47</u>		<u>49</u>	+2	
		•	•		•		
		•	•		•		

[별표 1의2]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083</u>	<u>1,085</u>	+2
•	•	•	
•	•	•	
일반직 계	<u>1,073</u>	<u>1,075</u>	+2
•	•	•	
•	•	•	
행정사무관	<u>406</u>	<u>404</u>	-2
•	•	•	
행정주사	<u>112</u>	<u>114</u>	+2
•	•	•	
•	•	•	
행정서기	<u>47</u>	<u>49</u>	+2
•	•	•	
•	•	•	